

※전문※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총학생회는 진리, 창조, 문명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진보적 지성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애국적 과학기술자로서 이 땅의 과학기술의 자주, 자립 발전을 실현함을 그 근본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대학인의 정신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난 1986년 개교한 이래 이 땅의 과학기술의 중추를 담당해 낼 많은 애국적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해 내는 선도적 역할의 바탕이 되어왔다.

이제 모든 과학기술대학인은 민족의 자주적 과학기술의 확립을 통한 자립경제의 건설을 위하여 학문과 진보적 사상의식의 함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제 과학기술대학인의 실천적 의지를 대덕벌에 결집시키기 위해 과학기술대학의 학생들은 1993년 00월 00일,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칙을 전 과학기술대학인의 의지를 모아 전문을 포함하여 제정 공포하는 바이다.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함)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를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의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회비 납부를 준수해야 한다.
- *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총학생회회장단, 집행국, 과학생회, 반대표자협의회,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제6조(학교당국과의 관계)

- * 1.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 2.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 2장 전체학생총회※

제7조(지위)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해 최고의결기구이다.

제8조(구성)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을 대의원으로 한다.

제9조(권한) 본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소집)

*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나 운영위원회 대의원의 2/3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2. 의장은 회의 10일 이전에 대회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결)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장) 전체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 3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3조(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전체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결정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4조(구성)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각 과학생회장, 반대표자 협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다. 단, 과학생회가 없을 경우 과대표 1인이 권한대행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또 집행국 국장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대의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15조(의장단) 전학대회 의장단은 총학생회장단이 겸임한다. 임기는 총학생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 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6조(업무) 전학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1.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 *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에 대한 사항.
- * 3. 회칙개정에 대한 사항.
- * 4.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한 학칙개정의 건의에 관한 사항.
- * 5. 운영위원회 산하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
- * 6. 기타 전학대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7조(소집) 전학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하다고 의장이 판단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18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제20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학생복지위원장단으로 구성되며, 집행국 국장단과 총학생회장단이 구성한 특별기구 기구장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개진권을 가진다.

제21조(의장) 총학생회장단이 운영위원회의장단을 겸임한다.

제22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1. 본회의 제반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2.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 * 3.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 4. 전학대회 의결을 거쳐 산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명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 5. 기타 전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1. 정기회는 월 1회로 한다.
- * 2. 임시회는 총학생회장이나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 한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24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제25조(지위)

- *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총학생회장의 결위 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26조(임기)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7조(신분보장) 총학생회장단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전학대회에서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8조(권한대행)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결위 때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하며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9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 1. 집행국 간부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 2. 전체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3. 본회의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 * 4. 전체학생총회,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제30조(특별기구)

- * 1. 총학생회장단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 2.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제 6장 집행국※

제31조(지위) 집행국은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제32조(구성) 집행국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국장과 간부들로 구성한다.

- * 1. 집행국 체계는 총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 * 2. 집행국의 국장은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1. 집행국은 총학생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2. 각 국은 예산편성서, 활동보고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3. 집행국 각 국장은 전학대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4. 전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34조(집행국 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총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 7장 과 학생회※

제35조(지위) 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최고학생기구이다.

제36조(구성) 각 과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제37조(회장단) 회원들 중에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과를 대표하고, 과학생회장은 전학대회의 위원이 된다.

제38조(업무 및 권한) 과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1. 각 학과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39조(가집행체계) 과학생회가 없는 과의 경우, 각 학년의 대표자들이 가집행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 8장 반 대표자 협의회※

제40조(지위) 반 대표자 협의회(이하 반대협)는 본회 무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학생기구이다.

제41조(구성) 학부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다.

제42조(의장단) 반대협의장단은 반대표들 중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며 반대협의장단은 반대협을 대표하며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대표 선출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반대협 회칙에 따른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반대협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1. 1학년들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대협의 회칙에 따른다.

제44조(반대협 운영) 반대협은 무학과 차원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9장 동아리연합회※

제45조(지위 및 목적) 동아리연합회는 학내의 등록된 동아리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46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모든 동아리 및 그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47조(회장단)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구성 및 업무를 맡는다.

1. 동아리 회원들 중에서 각 동아리 대표자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전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2. 동아리 연합회를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끔 구성한다.

제48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1.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 * 2. 동아리 활동에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49조(동아리 연합회 운영)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차원으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10장 상설위원회※

제50조(지위) 상설위원회는 본회의 업무 중, 많은 인력과 지속적인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일을 위한 운영위원회 산하 기구이다.

제51조(구성) 현재 존재하는 상설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 * 1. 학생복지위원회
- * 2. 행사준비위원회 - 상상효과

제52조(기구장) 자체 호선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장과 부장은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제53조(업무 및 권한)상설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1.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한다.
- * 2. 학생복지위원회는 본 회 회원과 관련된 복지시설 관리와 학내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 * 3. 상상효과의 경우 봄, 가을 축제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심의 및 집행한다.
- * 4. 상설위원회의 예산과 행사내용 등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전학대회 의결에 준하는 상황이 있기 전에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제54조(상설위원회 운영)상설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제 11장 재정※

제55(재원)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학교 지원금, 수익 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6(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7(회비의 관리)

- * 1. 본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 * 2. 본회의 회비는 집행국에서 관리한다.
- * 3. 본회의 회비는 본 회의 이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8조(기타 수입금) 기타 수입금은 수입 내역에 맞게끔 집행한다.

제59조(예산)

- * 1. 매 학기 집행국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고, 전학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 2. 예산안이 전학대회에서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3. 단, 총학생회 임기 시작부터 상반기 전학대회까지의 예산안은 12월 중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며 하반기 전학대회부터 총학생회 임기 마지막 일인 11월 30일까지의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의결한다.

제60(결산)

- * 1. 집행국에서 집행국과 상설위원회의 결산 보고서를 수집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한다.

- * 2. 결산보고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장 선거※

제61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제62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으로 해당하기 등록을 필 한 사람만 선거권을 가진다.

제63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들은 각 단체에서 마련한 선거시행세칙의 피선거권 자격이 주어진 이들에 한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주어진다.

- * 1. 선거권을 가진 자로 4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 * 2. 선거권을 가진 자로 3학기 이상을 수학한 자.

제64조(선거시기)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선거방법) 총학생회장단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2인1조로 전체회원 1/2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선관위에 등록 할 수 있다.
- * 2. 본 회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3. 유효 투표가 과반수가 않 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 4.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5.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이상 시 당선으로 한다.
- * 6.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2월 중으로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 * 7.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6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2. 중앙선관위는 선거일로부터 20일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 * 3. 중앙선관위는 전학대회 위원들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4. 중앙선관위는 당해년도 회장단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5. 중앙선관위는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

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제67조(보궐선거)

*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300일 이상일 경우 궐위나 탄핵(확정)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30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2.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68조(선거시행세칙) 기타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해 연도 중앙선거위에서 정한다.

제69조(당선무효)

* 1.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재적인 2/3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3. 당선이 취소되었을 경우 중앙선거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하여야 한다.

제70조(후보 최종 미등록) 재선거시, 후보자 최종 입후보 기간에도 등록된 자가 없을 경우, 해당 1년간의 학생회 체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71조(당선공고) 개표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3장 회칙개정※

제72조(공고)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본회 회원 1/20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2. 전학대회 대의원 1/3이상의 발의

* 3. 운영위원 1/2이상의 발의

제73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참석 인

원 과반수, 전학대회 참석대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75조(공포 및 발효)

- * 1. 확정 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2. 공포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전문은 총학생회의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우리 대학의 역사를 밝히며 학생회칙을 제정, 선포하는 부분이다. 회칙 제정 시의 이념을 그대로 살리고자 전문에 포함된 '과학기술대학'은 수정하지 않는다.

전체 학생총회는 전체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 실제로 어려우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의 형식을 띠게 되고 일반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비상시 전체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한편으로 과반수 참석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과반수 참석조항은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타학교 회칙에는 과반수 참석 조항을 없애거나, 비상학생총회라는 것을 따로이 둡니다. 여기에서 과반수 참석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은 민주주의 원칙적 측면과 실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하여 학생총회의 성립을 결정하면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체학생총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학생대표자들이 모여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게 됩니다.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경우 전체 학생회 사업의 의결권을 갖는 것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총학생회장단과 자치단체회장단이 보다 자주 모여 실무를 책임지고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현 총학생회장단은 새로 당선된 총학생회장단과 협의아래 이월기간을 가지며, 특별한 경우-현 총학생회장단의 유고 및 사고 등-를 대비하여 현 총학생회장단은 모든 권한을 신임 총학생회장단과 협의 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공식적인 임기는 다음해 2월말까지이나, 사전에 그 임기를 임시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앙집행국은 구체적인 구성에 대해 명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행국의 구성이 통상적으로 총학생회의 교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행국 전체의 임무와 역할만을 명시하고 각 국의 구성과 역할은 생략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앙집행국은 각 국별 부서와 중앙집행국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됩니다.

